



노스캐롤라이나주
평가위원회

의제:

명령수정

고위당국결정번호

원고

고용주

N.C. Gen. Stat. § 96-15(e)에 의거하여 그 자체로, 이 문제는 평가위원회 앞에 제시되었습니다. 일우편으로 발송된 고위당국결정번호에 사무오류가 나타납니다. 페이지, (문단) (줄)은 라고 명시했어야 합니다. 이 명령은 언급된 사무오류를 삭제하고 수정하기 위해 발행됩니다.

고위당국결정번호는 의도된 대로 명시하고자 위에서 설명한 대로 수정되었습니다. 항소권리는 이 명령 정정과 함께 시작합니다.

평가위원회 위원 Keith A. Holliday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가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.

이.

평가위원회

위원장

우편 날짜: